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72호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7 1 7 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총 무 과	2
○ 공 고 제 7 1 8 호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총 무 과	11
○ 공 고 제 7 2 1 호	4월 취득세 공시송달	세 무 1 과	19
○ 공 고 제 7 2 6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1
○ 공 고 제 7 3 3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3
○ 공 고 제 7 4 7 호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총 무 과	32

고 시

○ 고 시 제 4 4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92
---------------	-----------------	-----------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17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3.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 기여

2. 주요내용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동 141의28-30, 142-146번지 및 간석동 131의2 일부(도로), 141의1 일부(도로), 141의2 일부(도로)를 구월동으로 편입

- 행정동(간석2동 → 구월2동) 및 법정동(간석동 → 구월동) 변경

○ 관할구역 전반의 문구 및 표기 방식 통일

- 관할구역 제외 및 포함 문구 정리

- 연속적인 번지 표기 방식 및 번지와 호에 대한 표기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232,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법정동 간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 기여

☐ 주요내용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동 141의28-30, 142-146번지 및 간석동 131의2 일부(도로), 141의1 일부(도로), 141의2 일부(도로)를 구월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관련 별표의 구역 현황 수정
 - 행정동(간석2동→구월2동) 및 법정동(간석동→구월동) 변경
- 관할구역 제외 및 포함에 대한 문구 통일
 - 관할구역 제외 : (---) 안에서 작성 / 00동으로 편입된 00동
 - 관할구역 포함 : 별도 독립 문구 / 00동에서 편입한 00동
- 관할구역 전반의 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표기방식 정리
 - 연속적인 번지 표기 : 0000000
 - 번지에 대한 세부적인 호 표기 : 00의00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구월동	구월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구월동 628의4, 628의13, 629의2, 1068의2번지, 간석동으로 편입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 72의29번지 제외) 수산동에서 편입한 수산동 185의38-40, 185의42, 191의4, 192의2, 193, 194의1, 597의37번지 포함 간석초교다북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원(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131-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8-30, 142-146번지 포함)
	간석동	간석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간석동 산37의20, 산38의5, 225의23, 225의88, 225의254-256, 225의279번지, 구월동으로 편입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8-30, 142-146번지 제외) 구월동에서 편입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 72의29번지 포함
	만수동	만수동 일원(서창동으로 편입된 만수동 산87의1, 산88의1, 산89의3-6, 산91의3-4, 산99의1-2, 산100의5, 산111의3-4, 708의3, 709의3-4, 710의1-3, 710의5-8, 710의10, 711의1, 711의4, 712-713, 714의1-2, 715의1-2, 716의1-2, 717, 717의1-9, 718의1-4, 719, 719의1-5, 720-728, 729의1-2, 730, 730의1, 731-732, 733의1-2, 734-736, 737의1, 738의1, 739의2, 815, 816의1, 816의3, 817의1, 818의1번지 제외) 구월동에서 편입한 구월동 628의4, 628의13, 629의2, 1068의2번지 포함 수산동에서 편입한 수산동 1의1, 1의3, 1의8-9, 1의11, 1의14, 1의19-20, 1의22-27, 2의2-3, 2의5-7, 2의21, 2의45, 2의47-49, 2의51-59, 695의5-8, 695의16, 695의29번지 포함 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산37의20, 산38의5, 225의23, 225의88, 225의254-256, 225의279번지 포함 장수동에서 편입한 장수동 681, 681의1, 681의3, 682의1-2, 682의4-8, 682의11-12, 684, 684의4, 684의8-9, 685의1, 685의5-7, 686-687, 688의2, 688의4, 688의9, 689의4, 689의6, 689의13, 690의3, 698의3, 698의11, 699의1, 699의6, 700의1, 700의4-5, 701-708, 710, 710의3, 712-714, 761, 761의1, 762번지 포함
	장수동	장수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장수동 681, 681의1, 681의3, 682의1-2, 682의4-8, 682의11-12, 684, 684의4, 684의8-9, 685의1, 685의5-7, 686-687, 688의2, 688의4, 688의9, 689의4, 689의6, 689의13, 690의3, 698의3, 698의11, 699의1, 699의6, 700의1, 700의4-5, 701-708, 710, 710의3, 712-714, 761, 761의1, 762번지 제외)
	서창동	서창동 일원 만수동에서 편입한 만수동 산87의1, 산88의1, 산89의3-6, 산91의3-4, 산99의1-2, 산100의5, 산111의3-4, 708의3, 709의3-4, 710의1-3, 710의5-8, 710의10, 711의1, 711의4, 712-713, 714의1-2, 715의1-2, 716의1-2, 717, 717의1-9, 718의1-4, 719, 719의1-5, 720-728, 729의1-2, 730, 730의1, 731-732, 733의1-2, 734-736, 737의1, 738의1, 739의2, 815, 816의1, 816의3, 817의1, 818의1번지 포함 운연동에서 편입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운연동	운연동 일원(서창동으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도림동	도림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산1031의2, 산104, 584의31, 584의37, 584의6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8,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1, 626의1-44, 627의1-3번지, 논현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626의9, 626의45-50, 627의28, 584의97-98, 594의20-23, 34, 36, 44, 45, 46, 48, 50, 51, 79-80, 87-91, 595, 596의1-2, 597의3-5, 498의4, 600의1, 601-607, 607의1-2, 620의1-2, 621의2, 산93의3, 산94의3, 산96의2, 산96의3, 산97의2-4, 산98, 산100, 산100의1-5, 산102, 산102의1-5, 산103의3번지 제외)
수산동	수산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수산동 1의1, 1의3, 1의8-9, 1의11, 1의14, 1의19-20, 1의22-27, 2의2-3, 2의5-7, 2의21, 2의45, 2의47-48, 2의51-59, 595의5-8, 595의16, 595의29번지, 구월동으로 편입된 수산동 185의38-40, 185의42, 191의4, 192의2, 193, 194의1, 597의37번지 제외)
남촌동	남촌동 일원(논현동으로 편입된 남촌동 551의1-4번지 제외) 도림동에서 편입한 도림동 산1031의2, 산104, 584의31, 584의37, 584의6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8,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1, 626의1-44, 627의1-3번지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한 논현동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472의8-11, 474의1, 481의3, 524의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84의1번지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한 고잔동 597의69-72번지 포함
남동구	논현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논현동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472의8-11, 474의1, 481의3, 524의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48의1번지, 고잔동으로 편입된 논현동 383의25, 412의20-23, 415의57-58번지, 서창동으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도림동에서 편입한 도림동 626의9, 626의45-50, 627의28번지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한 고잔동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 산72의2, 산77의1-4, 산97의3, 산80의3번지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81의1, 83의1-2, 83의4, 83의6, 84의1-4, 85의1-2, 85의4-6, 86의20-23, 87, 88의1-5, 89, 89의1-3, 90, 91의1, 92의7, 94의1-4, 94의8-14, 94의16-25, 95의1-2, 96, 97의1-10, 98, 99의1-2, 100의1-6, 101-106, 106의1, 107-112, 113의1-4, 114, 114의1-4, 115-116, 117의1-3, 118의1-2, 119의1-8, 119의10-11, 119의13-21, 119의23-24, 119의26-28, 120의11, 121의6-10, 122-123, 124의1, 127의4, 255-6, 581의3-4, 586의11, 586의13-15, 586의26, 589-590, 590의1-3,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번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고잔공원 제외) 및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포함 남촌동에서 편입한 남촌동 551의1-4번지 포함 도림동에서 편입한 도림동 552의1-41, 산105의1-21번지 포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고잔동	고잔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597의69-72번지, 논현동으로 편입된 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81의1, 83의1-2, 83의4, 83의6, 84의1-4, 85의1-2, 85의4-6, 86의20-23, 87, 88의1-5, 89, 89의1-3, 90, 91의1, 92의7, 94의1-4, 94의8-14, 94의16-25, 95의1-2, 96, 97의1-10, 98, 99의1-2, 100의1-6, 101-106, 106의1, 107-112, 113의1-4, 114, 114의1-4, 115-116, 117의1-3, 118의1-2, 119의1-8, 119의10-11, 119의13-21, 119의23-24, 119의26-28, 120의11, 121의6-10, 122-123, 124의1, 127의4, 255-6, 581의3-4, 586의11, 586의13-15, 586의26, 589-590, 590의1-3,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번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고잔공원 제외) 및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제외) 논현동에서 편입한 논현동 383의25, 412의20-23, 415의57-58번지 포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쳐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18호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3.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2동-구월2동」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 기여
- 동별 행정구역 현황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자료 제공

2. 주요내용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동 141의28-30, 142-146번지 및 간석동 131의2 일부(도로), 141의1 일부(도로), 141의2 일부(도로)를 구월2동으로 편입
 - 행정동(간석2동 → 구월2동) 및 법정동(간석동 → 구월동) 변경
- 동별 관할구역 수정사항 전면 반영
 - 각 동별 관할 구역 현행화

- 관할구역 전반의 표기 통일성을 위한 표기 방식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 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453-2232,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2동-구월2동」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 기여
- 동별 행정구역 현황의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통한 현행화로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자료 제공

☐ 주요내용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동 141의29-30, 142-146번지 및 간석동 131의2 일부(도로), 141의1 일부(도로), 141의2 일부(도로)를 구월2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관련 별표의 구역 현황 수정
 - 행정동(간석2동→구월2동) 및 법정동(간석동→구월동) 변경
- 동별 관할구역 수정사항 전면 반영 : 별표 참고
 - 각 동별 관할 구역 현행화
 - 관할구역 전반의 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한 표기 방식 정리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제2조 관련)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 영 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계	20	20	
남동구	구월동	4	구월1동	구월동 258, 260의5, 277-294, 300-301, 426-550, 577, 578의1-2, 580의1, 580의4-5, 580의8, 581-582, 583의4, 584-596, 688의2, 688의7, 688의16, 689-896, 1072, 1080, 1081의3, 1081의7-8, 1178-1240, 1328-1331, 1378-1483, 1487-1560, 1576-1601번지 일원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구월2동	구월동 3-4, 6-7, 12, 20-27, 29-30, 32-34, 52-59, 69-70, 73의3, 341-343, 1071-1072, 1241-1254, 1322번지 일원 간석초교주변다북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원 (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141의29-30, 142-146번지 포함), 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포함
			구월3동	구월동 산62의8-9, 산84의7, 177, 180의4-31, 182의7-8, 201-203, 808-849, 862, 925, 1022, 1084, 1086-1177, 1333-1337, 1339-1433, 1437-1446, 1448-1476번지 일원
			구월4동	구월동 산1-9, 산16의1, 349, 361, 551, 557-575, 580의6-7, 583-584, 587, 597-688, 1068의28, 1255-1320, 1323-1325번지 일원
	간석동	4	간석1동	간석동 273, 275-277, 280-285, 292-294, 302-304, 307-343, 351-358, 397-399, 407-419, 427-470, 478-488, 491-495, 497-501, 503, 505, 508, 510, 512-521, 523, 532, 542-558, 731, 746의17, 748-749, 752, 755, 763, 899-909, 925-932번지 일원
			간석2동	간석동 8-11, 21-24, 27-31, 33-34, 39, 122-125, 129-130, 133-140, 141의1, 153-160, 163-176, 179-180, 182-195, 205-214, 913-914, 938 번지 일원 (구월동으로 편입된 간석동 131의 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9-30, 142-146번지 일원 제외)
			간석3동	간석동 산1, 산3-4, 산6, 산9-10, 산14-23, 산26-28, 산30, 산34-36, 산86, 1-7, 12, 26, 37, 40-67, 69-121, 224-227, 735-736, 767번지 일원
			간석4동	간석동 177, 216-217, 220-222, 228-241, 243-257, 267-271, 359-362, 364-376, 378-384, 387-395, 524-537, 560-614, 616-617, 762, 893-896, 935, 939번지 일원
남동구	만수동	6	만수1동	만수동 346-353, 367-373, 422-424, 586-597, 808의42-43, 927-937, 948-983, 995-999, 1003, 1005-1006, 1071-1072, 1106번지 일원
			만수2동	만수동 산1, 산21, 산32, 1-2, 3의1, 3의3-5, 5-6, 68, 71-74, 80, 822, 867-874, 1115의1, 1116-1120번지 일원
			만수3동	만수동 산2-3, 산6, 산8, 80의604, 107, 109(109의15, 109의233, 109의328, 109의333 일부, 109의431, 109의438 제외), 111, 116, 839-866, 988-989, 1114, 1115의2번지 일원
			만수4동	만수동 3-4, 9-30, 32-33, 35-40 산42-44, 산54-55, 산68-69, 산71, 45-67, 69, 84-90, 101-102, 373의1, 386의8, 389의8, 389의10, 391-393, 395-396, 409, 427-428, 431, 444의4, 873, 1113번지 일원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만수5동	만수동 875-926, 938-947, 991-994번지 일원
			만수6동	만수동 산86-113, 289-291, 332-339, 600-811, 831-832, 984-987, 1008-1052, 1065-1070, 1073-1109번지 일원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1	장 수 서창동	장수동 일원, 운연동 일원, 서창동 산1-19, 산29의1-16, 산30-52, 83의81-93, 159, 161의7-11, 178의1, 179, 179의1, 187, 187의1, 191-448, 454-469의24, 474-479, 484, 500의230, 504-520, 530의16, 533의2, 531-575, 584-626번지 일원
	서창동	1	서창2동	서창동 산29의45-산47, 83의120-124, 85-158, 161의18-24, 167-177, 178의4-11, 179의7, 187의3, 452-453, 469의25, 481-482, 500의102-339, 501-503, 521-530, 576-583, 627-816번지 일원
	도림동 수산동 남촌동	1	남 촌 도림동	도림동 일원, 수산동(구월동으로 편입된 수산동 185의38-40, 185의42, 191의4, 192의2, 193, 194의1, 597의37 제외) 일원, 남촌동 일원
	논현동	2	논현1동	논현동 산1-30(산13-16, 산19-20 제외), 1-30, 32-58, 60-64, 66-68, 70, 109-112, 322, 549, 577, 591-617, 651-682, 696-700, 720-721, 727-728, 731, 775의1-2번지 일원
			논현2동	논현동 산56, 산32-33, 산56-57, 산66, 산75-78, 산80-81, 산83-86, 산94, 산105, 313의5, 423, 427-440, 442-451, 453-454, 471, 473, 491, 505-507, 513, 543, 553-575, 578-590, 618-635, 643-648, 689, 702-708, 717번지 일원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1	논 현 고잔동	논현동 산13-16, 산19-20, 179, 209, 264, 269-272, 359, 383, 409, 532, 649-650, 719, 732-786(775의1-2 제외), 970번지 일원, 고잔동 일원,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쳐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21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대	상	김** 외 13인 (공동납세자 포함)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 4. 3.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등기번호	비고
1	491112-*****	김**	28200	101501-2023-01-2-510-001239	취득세	독촉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966,140	1072885664267	
2	880916-*****	한**욱	28200	101501-2023-01-2-522-000007	취득세	독촉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898,800	1072885664268	
3	600214-*****	박**수	28200	101501-2023-03-2-510-000008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3,266,750	1072895150269	공동납세자 아**희 배달 완료
4	571107-*****	유**숙	28200	101501-2023-03-2-522-001187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1,294,960	1072885664260	
5	820831-*****	이**준	28200	101501-2023-03-2-540-005969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1,678,650	1072885664250	
6	571107-*****	유**숙	28200	101501-2023-03-2-550-001189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4,182,100	1072885664261	
7	571107-*****	유**숙	28200	101501-2023-03-2-551-001195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2,479,920	1072885664262	
8	730910-*****	윤**원	28200	101501-2023-03-2-582-000012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3,384,320	1072895150275	공동납세자
9	700104-*****	윤**란	28200	101501-2023-03-2-582-000012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3,384,320	1072895150274	
10	611218-*****	윤**원	28200	101501-2023-03-2-582-000012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3,384,320	1072895150273	
11	730819-*****	서**섭	28200	101501-2023-03-2-660-000013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963,240	1072885664259	
12	520923-*****	정**순	28200	101501-2023-03-2-660-010783	취득세	수시분	2023-03-10	수령인 없음	15,550	1072885664247	

공시송달 내역(과세예고 통지)

연번	주민번호	납세자명	송달내용	등기번호	공고사유	비고
1	981226-*****	조**원	지방세과세예고 통지 (상속취득세)	1072895150265	폐문부재	공동납세
2	630527-*****	박**숙	지방세과세예고 통지 (상속취득세)	1072895150264	폐문부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26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4. ~ 2023. 4. 19.
3. 공고대상 : 150구9652 외 30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이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3. 4. 4.

남 동 구 청 장



운행정지자동차현황(2023년 3월 분)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150구9652	벤츠 E220 d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31	소유자 요청
2	252보8430	Q8 5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31	소유자 요청
3	183저7769	Q8 5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31	소유자 요청
4	101마6682	A6 4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31	소유자 요청
5	143거2590	A6 4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3.03.31	소유자 요청
6	302부3416	A5 Sportback 4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3.03.31	소유자 요청
7	24머2155	e-tron 55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31	소유자 요청
8	317무2993	Tiguan 2.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2023.03.31	소유자 요청
9	163거9074	Arteon 2.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31	소유자 요청
10	351노5959	볼보 XC60D5 AWD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31	소유자 요청
11	385도4740	렉서스 ES300h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2023.03.24	소유자 요청
12	124더5051	A8 50 TDI quattro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3.03.23	소유자 요청
13	104허8212	XM3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3.03.22	소유자 요청
14	391더3117	레인저로버 SDV8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3.03.22	소유자 요청
15	107도7845	Q8 4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2023.03.22	소유자 요청
16	45거7665	E300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	2023.03.22	소유자 요청
17	31하3322	그랜저(GRANDEUR)	신한카드(주)	2023.03.16	소유자 요청
18	349로5994	벤츠 S350 d 4MATIC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15	소유자 요청
19	65더2016	A7 5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	2023.03.15	소유자 요청
20	128하1956	Q8 4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15	소유자 요청
21	179도8920	A6 4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15	소유자 요청
22	150부6030	A6 45 TFSI quattro	신한카드(주)	2023.03.14	소유자 요청
23	159서2717	BMW X6 xDrive30d M Sport Package	신한카드(주)	2023.03.14	소유자 요청
24	246무7890	마세라티 르반떼	신한카드(주)	2023.03.14	소유자 요청
25	145하8611	Q7 4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10	소유자 요청
26	108더7998	A3 40 TFS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10	소유자 요청
27	339고8700	Mercedes-AMG S63 4Matic + Coupe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08	소유자 요청
28	135부1236	렉서스 RX450h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07	소유자 요청
29	348버6991	A6 4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3.03.03	소유자 요청
30	258조6780	A7 5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03	소유자 요청
31	169호4735	A8 L 5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3.03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33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 4. 3.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4.3. ~ 2023.4.18.
3. 공고대상 : 이륜차 29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2-0024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1.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구월동1125-10 엠타워
	2022-0024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1.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구월동1162-4, 부광빌라 나동 옆 담벼락
	2022-002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은봉로165번길 24, 논현파크포레 지하1층 주차장 108동
	2022-0025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은봉로165번길 24, 논현파크포레 지하1층 주차장 108동

관
리
번
호

2022-0025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논현동 678-6, 백령도회집 맞은편 인도

2022-0025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논현동 678-6, 백령도회집 맞은편 인도

2022-0025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7.
- 견인일 : 2022.10.04.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포구로10번길 9, 대양빌라 앞 이면도로

2022-0027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0.
- 견인일 : 2022.10.13.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구월말로39번길 50 공영주차장

2022-0027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1.
- 견인일 : 2022.10.13.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구월남로127, 더클래스2차 사유지주차장

관
리
번
호

2022-0027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1.
- 견인일 : 2022.10.13.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남촌동247-3 이면도로

2022-0031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0.20.
- 견인일 : 2022.11.09.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복개서로 55

2022-0031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0.20.
- 견인일 : 2022.11.09.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복개서로 55

2022-0031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0.28.
- 견인일 : 2022.11.25.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만수역 BYC 앞

2022-0032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03.
- 견인일 : 2022.11.25.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간석동 100-1 세종에이팩스

관
리
번
호

2022-0017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6.22.
- 견인일 : 2022.09.23.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에코중앙로163, 에코메트로7단지 주차장

2022-0024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8.26.
- 견인일 : 2022.09.30.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장승남로33번길 21, 대동아파트 사유지

2022-0024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1.
- 견인일 : 2022.09.30.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동 111-348, 천우맨션 A동 담벼락

2022-0024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01.
- 견인일 : 2022.09.30.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1128-1, 아트뷰타워 사유지 주차장

2022-0028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8.
- 견인일 : 2022.11.18.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도림동553-2 맞은편 인도

관
리
번
호

2022-0028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28.
- 견인일 : 2022.11.18.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도리미로8, 아이파크아파트 지하주차장 105동 104번 기둥 맞은편

2022-0029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30.
- 견인일 : 2022.11.18.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역로42 인도 위

2022-003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0.06.
- 견인일 : 2022.11.16.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201-147

2022-0032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07.
- 견인일 : 2022.11.30.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동1112, 롯데맨션 앞 전봇대

2022-0032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09.
- 견인일 : 2022.11.30.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서로40, 스마일조명 앞 도로

관
리
번
호

2022-0032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08.
- 견인일 : 2022.11.30.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은봉로255번길 5-15

2022-0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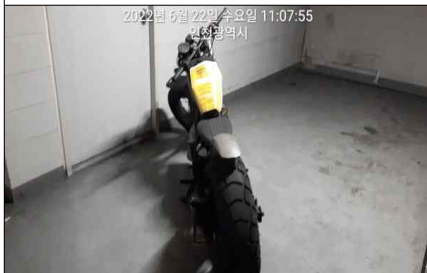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9.14.
- 견인일 : 2022.12.21.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구월테크노밸리 A동 지하1층

2022-0034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30.
- 견인일 : 2022.12.30.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지구대 주차장

2022-0017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6.22.
- 견인일 : 2022.09.23.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에코중앙로163, 에코메트로7단지 주차장

2022-0017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06.22.
- 견인일 : 2022.09.23.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에코중앙로163, 에코메트로7단지 주차장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	보관장소	비고
1	2022-0024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1125-10 엠타워	2022.10.04.	(취)한신편차	
2	2022-0024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1162-4 부광빌라 나동 옆 담벼락	2022.10.04.	(취)한신편차	
3	2022-0025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은봉로165번길 24 논현파크포레 지하1층 주차장 108동	2022.10.04.	(취)한신편차	
4	2022-0025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은봉로165번길 24 논현파크포레 지하1층 주차장 108동	2022.10.04.	(취)한신편차	
5	2022-0025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678-6 백령도회집 맞은편 인도	2022.10.04.	(취)한신편차	
6	2022-0025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678-6 백령도회집 맞은편 인도	2022.10.04.	(취)한신편차	
7	2022-0025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포구로 10번길 9 대양빌라 앞 이면도로	2022.10.04.	(취)한신편차	
8	2022-0027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말로39번길 50 공영주차장	2022.10.13.	(취)한신편차	
9	2022-0027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남로127 더클래스2차 사유지주차장	2022.10.13.	(취)한신편차	
10	2022-0027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촌동247-3 이면도로	2022.10.13.	(취)한신편차	
11	2022-0031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복개서로 55	2022.11.09.	(취)한신편차	
12	2022-0031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복개서로 55	2022.11.09.	(취)한신편차	
13	2022-0031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역 byc 옆	2022.11.25.	(취)한신편차	
14	2022-0032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100-1 세종에이팩스	2022.11.25.	(취)한신편차	
15	2022-0017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एको중앙로163, 에코메트로7단지 주차장	2022.09.23.	(취)인천폐차사업소	
16	2022-0017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एको중앙로163, 에코메트로7단지 주차장	2022.09.23.	(취)인천폐차사업소	
17	2022-0017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एको중앙로163, 에코메트로7단지	2022.09.23.	(취)인천폐차사업소	

								주차장			
18	2022-0024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장승남로33번길 21, 대동아파트 사유지	2022.09.30.	(주)인천폐차사업소	
19	2022-0024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동 111-348, 천우맨션 A동 담벼락	2022.09.30.	(주)인천폐차사업소	
20	2022-0024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1128-1, 아트뷰타워 사유지 주차장	2022.09.30.	(주)인천폐차사업소	
21	2022-0028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도림동553-2 맞은편 인도	2022.11.18.	(주)인천폐차사업소	
22	2022-0028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도리미로8, 아이파크아파트 지하주차장 105동 104번 기둥 맞은편	2022.11.18.	(주)인천폐차사업소	
23	2022-0029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로42 인도 위	2022.11.18.	(주)인천폐차사업소	
24	2022-003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201-147	2022.11.16.	(주)인천폐차사업소	
25	2022-0032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동1112, 롯데맨션 앞 전봇대	2022.11.30.	(주)인천폐차사업소	
26	2022-0032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서로40, 스마일조명 앞 도로	2022.11.30.	(주)인천폐차사업소	
27	2022-0032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은봉로255번길 5-15	2022.11.30.	(주)인천폐차사업소	
28	2022-0026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구월테크노밸리 A동 지하1층	2022.12.21.	(주)인천폐차사업소	
29	2022-0034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지구대 주차장	2022.12.30.	(주)인천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747호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정비하고, 다면평가 실시 근거와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8조제3항)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정비(안 제17조제5항)
- 다. 다면평가 실시 근거와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장)
- 라. 별표 및 별지 서식 보완·개선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 032-453-2192, FAX 032-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8조의4, 제17조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4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정비하고, 다면평가 실시 근거와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8조제3항)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정비(안 제17조제5항)
- 다면평가 실시 근거와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장)
- 별표 및 별지 서식 보완·개선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8조의4, 제17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상”을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급자 또는”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로 한다.

제17조제5항 전단 중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

제9장(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다면평가

제46조(다면평가 실시) 구청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횟수 및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다면평가 방법) ①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적용을 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10,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관련)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데 이 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능 장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기 사 :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산업기사 :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기 능 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염색 기 능 사 :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녹 지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기능사: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기 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조경, 산림, 환경 기능사 :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산업기사 :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 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 (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 (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 (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 (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 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수의사 약사 위생사(5)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 제 임 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상,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상,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공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변비용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 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 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위 료정보관리사, 간 호사, 위생사, 응급 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 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 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 산비율 적용:간호 사, 조산사, 응급 구조사2급, 의지보 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 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 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 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설업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설업기사2급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기사3급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 학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농업연구	물 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촌지도	농 업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 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축산, 식품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기 사 : 축산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자원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 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 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 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 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 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신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신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일 일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군.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연 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출 신학 교 명	⑧ 특기	⑨ 병역 필 미 필	⑩ 희망 기관	⑪ 신원조사			⑫ 추 천			⑬ 임 용			비 고	
										의 회 회	회 보 부	송 부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연 월 일	직 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한자					직류		
⑦ 선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 시행 제 회 1차 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3.5cm×4.5cm)	
년 월 일 (인) 남 동 구 청 장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 .	. . .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년 시행 제 회 시험								
임용예정직명 :		(급 류)				위 요구서에 첨부하 는 것과 동일한 원 판, 동일한 규격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⑩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삭제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u>명예퇴직수당</u> · <u>조기퇴직수당</u> 의 지급	2. ----- ----- <u>명예퇴직수당</u> · <u>조기퇴직수당</u> - --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제8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제8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 ----- <u>수급자</u> 또는 <u>차상위 계층이거나</u> , ----- -----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④ (생략)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	⑤ ----- -----

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 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 ⑨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한다.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9장 다면평가

제46조(다면평가 실시) 구청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횟수 및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다면평가 방법) ①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신 설>

적용을 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호~제7호 생략)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제2항 생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4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31.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53 (장수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577번길 29 (고잔동) 외 2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53 (장수동)	2009.11.16.	만의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03.3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의골로195번길 5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3을 건물번호로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577번길 29 (고잔동)	2023.03.31.	건축물대장 말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60 (운연동)	2023.03.31.	건축물대장 말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77 (간석동)	2023.03.31.	건축물대장 말소	